
『캐나다, 에너지효율 규정 18차 개정안 최종 채택 및 발표』 심층분석 보고서

2025. 05.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414.80, 8481.80, 9032.10 등 (보고서 2쪽 [표 1] 참고)
통보국	캐나다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99,976 (2024)
작성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30
불임. 규제 참고자료	30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캐나다 천연자원부(NRCan)는 에너지효율 규정(2016)의 18차 개정 최종안*을 2025년 4월 9일 공식 관보 Part II에 공표하고, 2025년 10월 10일 발효를 앞두고 있음
- 본 개정 최종안은 2024년 6월 공개된 개정 초안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 대비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최종 채택된 규정임
- * 개정 초안은 2024년 6월 26일 CAN/727로 통보된 바 있음
- (규제요지) 미국 에너지효율 규제와의 조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기준 및 시험 참조 표준 개정, 규제 강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별 에너지효율 개정안 준수기한 연장

TBT 통보번호	■ CAN/727/Add.1	통보일	■ 2025-04-10
		고시일	■ 2025-04-09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효율 규정(2016)을 개정하는 규정 (18차 개정) ■ Regulations Amending the Energy Efficiency Regulations, 2016 (Amendment 18)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천연자원부 (NRCan) ■ Natural Resources Canada (NRCan)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효율, 라벨링, 소비자 정보 제공 		
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최종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3월 20일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0월 10일 ■ 일부 조항의 경우, 관보 고시일(2025년 4월 9일)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 2029년 5월 6일 (※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내 제품별 세부 개정사항 참고)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에너지 사용 제품
	■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energy-using products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 압축기, 수도꼭지, 선간 전압 온도 조절기, 수영장 펌프, 샤워 헤드, 실내 에어컨, 대형 에어컨,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대형 히트 펌프,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가스 난방기, 전기온수기,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기름 연소 온수기,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일반 조명용 램프 		
對 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976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14.80, 8481.80, 9032.10, 등 (이하 [표 1] 참고)

※ 본 규제 적용 대상 및 해당 HS Code는 다음과 같음

[표 1] 규제 적용 품목 및 해당 HS Code

품목	HS Code
Air compressors (공기 압축기)	8414.80
Faucets (수도꼭지)	8481.80
Line Voltage thermostats (선간 전압 온도 조절기)	9032.10
Pool pumps (수영장 펌프)	8413.70
Showerheads (샤워 헤드)	8424.90
Room air conditioners (실내 에어컨)	8415.10
Large air conditioners (대형 에어컨)	8415.90
Single package central air conditioners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8415.90
Split system central air conditioners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8415.90
Portable air conditioners (이동식 에어컨)	8415.82
Large heat pumps (대형 히트펌프)	8418.61
Single package central heat pumps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8418.61
Split system central heat pumps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8418.61
Gas furnaces (가스 난방기)	7321.81
Electric water heaters (전기온수기)	8516.10
Gas-fired storage water heaters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8419.19
Oil-fired water heaters (기름 연소 온수기)	8419.19
Gas-fired instantaneous water heaters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8419.11
General service lamps (일반 조명용 램프)	8539.10, 8539.22, 8539.29, 8539.21, 8539.31, 8539.32, 8539.39, 8539.41, 8539.49, 8539.51, 8539.52, 8539.90

2

개정 세부내용

□ 개요

○ 에너지효율 규정(2016)

- 에너지효율 규정(2016)은 다양한 한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 및 라벨링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제품 유형별로 DIVISION 이하 Subdivision으로 구분하여 적용 범위, 에너지 효율 기준 및 시험 기준 등을 규정함
- 2016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 18차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었으며, 본 개정안은 캐나다의 에너지효율 규정과 미국의 에너지효율 규정의 조화를 목적으로 함
 - 개정 초안은 CAN/727로 2024년 6월 26일 통보되어 2024년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음
 - 본 개정 최종안은 개정 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최종 채택 및 공표됨

□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초안(CAN/727) 주요 개정사항

- 2024년 6월 고시된 개정 초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적용 범위 확대) 다음 제품을 규정 적용 대상인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추가하고, 각 제품 관련 에너지효율 규정을 신설함

[표 2] 추가되는 제품 및 신설 조항 위치

제품	관련 규정 신설 위치 (에너지효율 규정 조항 번호)
선간 전압 온도 조절기	DIVISION 9, Subdivision F (594조~597조)
수도꼭지	DIVISION 13, Subdivision B (803.1조~803.4조)
샤워 헤드	DIVISION 13, Subdivision C (803.5조~803.8조)
수영장 펌프	DIVISION 14, Subdivision B (808조~811조)
공기 압축기	DIVISION 15 (812조~815조)

- ② (일반 조명용 램프의 범위 변경) 미국의 에너지효율 규정과 일치하도록 제품 구분을 통합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함
- ③ 에너지효율 기준 및 시험 기준 변경
 - 에어컨, 히트펌프, 난방기, 온수기, 일반 조명용 램프 등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미국 규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 시험 기준은 미국연방규정집(CFR)에 명시된 시험 기준을 대부분 전체 인용하도록 함
- **개정 최종안(CAN/727/Add.1) 주요 개정사항**
- 본 개정 최종안은 2024년 6월 고시된 개정 초안에 대해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초안을 수정한 뒤 최종 채택하였음
 - ① 개정된 에너지효율 규정의 준수기한 연기
 - ② 미국 에너지효율 규정과의 더 긴밀한 조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기준 및 시험 기준 일부 개정
 - ③ 일부 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 대상 추가
 - 의료 및 장기 요양 시설 전용으로 설계, 판매되는 수도꼭지 및 샤워 헤드
 - 특정 사양의 상업용 수영장 펌프
 - ④ 조기 준수 등에 대한 경과 규정 개정

□ **개정 최종안(CAN/727/Add.1) 세부 내용**

※ 이하 개정 세부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하고, 오기 정정이나 단순한 표현 방식의 변경 등 일부 변경사항은 생략하였음

I. 해석

○ 정의 및 인용 표준 (규제원문 1조 참고)

- (용어 정의 개정) 기준 규정(formal Regulations) 및 신규 규정(new Regulations)에 대해 개정 초안에서 제안된 용어 정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본 개정 최종안은 개정 초안과 달리 기존 규정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지 않고, 신규 규정에 대한 정의만 개정 최종안의 관보 고시 및 발효에 따라 추가 및 삭제되도록 함

[표 3] 에너지효율 규정 1(1) 개정 비교표

비고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다음 용어 정의가 추가됨	추가된 용어 정의는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다음과 같이 변경이 예정됨
개정 사항	기존 규정은 에너지효율 규정(2016)을 개정하는 규정(18차 개정)의 1(1)항이 발효되는 날 직전에 적용되던 규정을 의미한다.	기존 규정은 에너지효율 규정(2016)을 개정하는 규정(18차 개정)의 1(1)항이 발효되는 날 직전에 적용되던 규정을 의미한다.

	<p>신규 규정은 에너지효율 규정(2016)을 개정하는 규정(18차 개정)의 1(1)항이 발효되는 날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p>	<p>- (신규 규정에 대한 용어 정의 삭제)</p>
--	---	-----------------------------------

※ 개정 초안 대비, 본 개정 최종안에서 삭제된 내용을 붉은색 취소선으로 표시함

- (인용 표준 범위 확대) NEMA MG-1^{*}을 NEMA로 변경하여 NEMA의 다른 표준 또는 기술 문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NEMA: 미국 전기제조업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MG-1은 모터 및 발전기(Motors and Generators)에 대한 NEMA 표준을 의미함

[표 4] 에너지효율 규정 1조 (3)항 개정 비교표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인용 표준 (3) 본 규정에서 AHRI, ANSI, ASHRAE, CGA, CIE, CSA, IEC, IEEE, IES 또는 NEMA MG-1 표준 또는 기술 기준 문서에 대한 참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표준 또는 기술 기준 문서에 대한 참조로 읽어야 한다.	인용 표준 (3) 본 규정에서 AHRI, ANSI, ASHRAE, CGA, CIE, CSA, IEC, IEEE, IES 또는 NEMA 표준 또는 기술 기준 문서에 대한 참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표준 또는 기술 기준 문서에 대한 참조로 읽어야 한다.

II. DIVISION 1, subdivision K, 기타 냉장 제품

○ 용어 정의 (규제원문 6조 참고)

- 에너지효율 규정 70조 내 ‘10 C.F.R. 부속서 A’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해당 부속서의 내용을 예외 없이 모두 적용하도록 함

[표 5] 에너지효율 규정 70조 ‘10 C.F.R. 부속서 A’ 용어 정의 개정 비교표

개정 전 에너지효율 규정	개정 최종안(CAN/727/Add.1)
10 C.F.R. 부속서 A 는 수시로 개정되는 미국연방규정집 Title 10, Part 430, Subpart B의 부속서 A, 냉장고, 냉장-냉동고, 기타 냉장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section 7에 언급된 면제 제외)을 의미한다.	10 C.F.R. 부속서 A 는 수시로 개정되는 미국연방규정집 Title 10, Part 430, Subpart B의 부속서 A, 냉장고, 냉장-냉동고, 기타 냉장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을 의미한다.

III. DIVISION 2 에어컨, 응축기 및 칠러(chiller)

○ Subdivision B, 대형 에어컨 (규제원문 15~16조 참고)

-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 적용 연기

-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제조 기간 기준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118조 Table 1 및 119조 Table이 각각 [표 6] 및 [표 7]과 같이 개정됨

[표 6] 에너지효율 규정 118조 Table 1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3	냉각 용량이 19kW 이상, 40kW 미만이고, 난방 장치가 없거나 전기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4	냉각 용량이 19kW 이상, 40kW 미만이고, 난방 장치가 없거나 전기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7	냉각 용량이 40kW 이상, 70kW 미만이고, 난방 장치가 없거나 전기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8	냉각 용량이 40kW 이상, 70kW 미만이고, 난방 장치가 없거나 전기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10	냉각 용량이 70kW 이상, 223kW 미만이고, 난방 장치가 없거나 전기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11	냉각 용량이 70kW 이상, 223kW 미만이고, 난방 장치가 없거나 전기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14	냉각 용량이 19kW 이상, 40kW 미만이고, 전기 난방 장치가 아닌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15	냉각 용량이 19kW 이상, 40kW 미만이고, 전기 난방 장치가 아닌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18	냉각 용량이 40kW 이상, 70kW 미만이고, 전기 난방 장치가 아닌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19	냉각 용량이 40kW 이상, 70kW 미만이고, 전기 난방 장치가 아닌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21	냉각 용량이 70kW 이상, 223kW 미만이고, 전기 난방 장치가 아닌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22	냉각 용량이 70kW 이상, 223kW 미만이고, 전기 난방 장치가 아닌 난방장치가 있는 대형 에어컨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표 7] 에너지효율 규정 119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3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제조된 대형 에어컨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제조된 대형 에어컨	...
4	2023.01.01. 이후에 제조된 대형 에어컨	2023.01.01. 이후에 제조된 대형 에어컨	

○ Subdivision D, 일체형(single package) 중앙식 에어컨 (규제원문 17~19조 참고)

-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 적용 연기

-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제조 기간 기준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126조 Table 2 및 127조 Table○] 각각 [표 8] 및 [표 9]와 같이 개정됨

[표 8] 에너지효율 규정 126조 Table 2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2	공간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닌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	2023.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23.01.01.부터 2026.01.01.전까지
3	공간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닌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5	공간 제약이 있는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	2023.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23.01.01.부터 2026.01.01.전까지
6	공간 제약이 있는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표 9] 에너지효율 규정 127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3상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3상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
5.1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3상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3상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	...

- 경과 조치 개정사항 변경

- (개정 초안)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127.1조로 조기 준수에 관한 경과 조치가 추가되고, 발효일에 해당 경과 조치가 삭제되도록 함
- (개정 최종안)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다음과 같이 수정된 127.1조가 추가되고, 발효일에 해당 경과 조치가 변경되도록 함

[표 10] 에너지효율 규정 127.1조 개정 비교표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비고
경과 조치 – 조기 준수 127.1 신규 규정의 126조와 127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은 126조와 127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과 조치 – 조기 준수 127.1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에 적용되는 신규 규정 126조와 127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본 규정 126조 및 127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추가
– (삭제)	조기 준수 127.1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이었다면 적용 되었을 126조 및 127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변경 예정

- Subdivision F, 분리형(split system) 중앙식 에어컨 (규제원문 21~23조 참고)
 -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 적용 연기
 - 개정된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을 적용하는 제조 기간 기준일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134조 Table 2 및 135조 Table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표 11] 에너지효율 규정 134조 Table 2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1	덕트가 작고, 고속형인 것을 제외한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	1995.02.03.부터 2025.01.01.전까지	1995.02.03.부터 2026.01.01.전까지
2	공간 제약이 있거나, 덕트가 작고 고속형인 것을 제외한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3	덕트가 작고, 고속형인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1995.02.03.부터 2025.01.01.전까지	1995.02.03.부터 2026.01.01.전까지
4	덕트가 작고, 고속형인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5	공간 제약이 있는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표 12] 에너지효율 규정 135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2	1995.02.03.부터 제조된 3상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1995.02.03.부터 제조된 3상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
2.1	2025.01.01. 이후에 제조된 3상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2026.01.01. 이후에 제조된 3상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	

- 경과 조치 개정사항 변경

- (개정 초안)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135.1조로 조기 준수에 관한 경과 조치가 추가되고, 발효일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도록 함
- (개정 최종안)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표 13]과 같이 135.1조로 수정된 경과 조치가 추가되고, 발효일에 해당 조항이 변경되도록 함

[표 13] 에너지효율 규정 135.1조 개정 비교표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비고
경과 조치 – 초기 준수 135.1 신규 규정의 134조와 135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은 134조와 135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과 조치 – 초기 준수 135.1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에 적용되는 신규 규정 134조 및 135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본 규정 134조 및 135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추가
– (삭제)	초기 준수 135.1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이었다면 적용되었을 134조 및 135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변경 예정

IV. DIVISION 3 히트펌프

- Subdivision C, 대형 히트펌프 (규제원문 31~32조 참고)
 -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 적용 연기
 - 개정된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을 적용하는 제조 기간 기준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197조 Table 1, Table 2 및 198조 Table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표 14] 에너지효율 규정 197조 Table 1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3	냉방 능력이 19kW 이상, 40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4	냉방 능력이 19kW 이상, 40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7	냉방 능력이 40kW 이상, 70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8	냉방 능력이 40kW 이상, 70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10	냉방 능력이 70kW 이상, 223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11	냉방 능력이 70kW 이상, 223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표 15] 에너지효율 규정 197조 Table 2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3	냉방 능력이 19kW 이상, 40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4	냉방 능력이 19kW 이상, 40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7	냉방 능력이 40kW 이상, 70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8	냉방 능력이 40kW 이상, 70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10	냉방 능력이 70kW 이상, 223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11	냉방 능력이 70kW 이상, 223kW 미만인 대형 히트펌프		2023.01.01 이후	2026.01.01 이후

[표 16] 에너지효율 규정 198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3	2018.01.01.부터 2023.01.01.전까지 제조된 대형 히트펌프	2018.01.01.부터 2026.01.01.전까지 제조된 대형 히트펌프	...
4	2023.01.01. 이후에 제조된 대형 히트펌프	2026.01.01. 이후에 제조된 대형 히트펌프	

○ Subdivision E,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규제원문 33~36조 참고)

- 용어 정의 개정

-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해석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표 17] 에너지효율 규정 203조 중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정의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전 에너지효율 규정	개정 최종안(CAN/727/Add.1)
203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는 단상 또는 3상 공기-공기 중앙식 히트펌프로, 일체형 장치이고 냉방 또는 난방 능력이 19kW(65,000Btu/h) 미만인 것을 의미 한다. 단, 일체형 수직(vertical) 히트펌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는 단상 또는 3상 공기-공기 중앙식 히트펌프로, 일체형 장치이고 냉방 능력이 19kW(65,000Btu/h)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단, 일체형 수직 히트펌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적용 연기

- NRCAN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 적용 기준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함
-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205조 Table 2 및 206조 Table이 각각 [표 18] 및 [표 19]와 같이 변경됨

[표 18] 에너지효율 규정 205조 Table 2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4	공간 제약이 있는 것을 제외한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	1995.02.03.부터 2025.01.01전까지	1995.02.03.부터 2026.01.01전까지
5	공간 제약이 있는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1995.02.03.부터 2025.01.01전까지	1995.02.03.부터 2026.01.01전까지
6	공간 제약이 있는 것을 제외한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7	공간 제약이 있는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표 19] 에너지효율 규정 206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7	2023.01.01.부터 2025.01.01.전까지 제조된 3상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2023.01.01.부터 2026.01.01.전까지 제조된 3상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8	2025.01.01. 이후 제조된 3상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2026.01.01. 이후 제조된 3상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	

- 경과 조치 개정사항 변경

- (개정 초안)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206.1조로 조기 준수에 관한 경과 조치가 추가되고, 발효일에 해당 경과 조치가 삭제되도록 함
- (개정 최종안)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206.1조로 수정된 경과 조치가 추가되고, 발효일에 해당 조항이 변경되도록 함

[표 20] 에너지효율 규정 206.1조 개정 비교표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비고
경과 조치 - 조기 준수 206.1 신규 규정의 205조 및 206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는 205조 및 206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과 조치 - 조기 준수 206.1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에 적용되는 신규 규정 205조 및 206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본 규정 205조 및 206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추가
- (삭제)	조기 준수 206.1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였다면 적용되었을 205조 및 260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변경 예정

○ Subdivision G,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규제원문 37~40조 참고)

- 용어 정의 개정

-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해석을 명확히 하고,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표 21] 에너지효율 규정 211조 중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정의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전 에너지효율 규정	개정 최종안(CAN/727/Add.1)
211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는 단상 또는 3상 공기-대-공기 중앙식 히트펌프로 분리형이고 냉방 또는 난방 능력이 19kW(65,000Btu/h)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는 단상 또는 3상 공기-대-공기 중앙식 히트펌프로 분리형이고 냉방 능력이 19kW(65,000Btu/h)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 적용 연기

- 개정된 에너지효율 기준 및 시험 기준을 적용하는 제조 기간 기준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함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213조 Table 2 및 214조 Table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표 22] 에너지효율 규정 213조 Table 2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1	덕트가 작고 고속형인 것을 제외한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	1998.12.31.부터 2025.01.01.전까지	1998.12.31.부터 2026.01.01.전까지
2	덕트가 작고 고속형인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1998.12.31.부터 2025.01.01.전까지	1998.12.31.부터 2026.01.01.전까지
3	공간 제약이 있거나 덕트가 작고 고속형인 것을 제외한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4	공간 제약이 있는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5	덕트가 작고 고속형인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2025.01.01. 이후	2026.01.01. 이후

[표 23] 에너지효율 규정 214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4	1998.12.31.부터 2025.01.01.전까지 제조된 3상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1998.12.31.부터 2026.01.01.전까지 제조된 3상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
5	2025.01.01. 이후 제조된 3상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2026.01.01. 이후 제조된 3상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	

- 경과 규정 개정사항 변경

- (개정 초안)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214.1조로 조기 준수에 관한 경과 조치가 추가되고, 발효일에 해당 경과 조치가 삭제되도록 함
- (개정 최종안)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214.1조로 수정된 조기 준수 관련 경과 조치가 추가되고, 발효일에 214.1조가 변경되도록 함

[표 24] 에너지효율 규정 214.1조 추가 및 변경사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비고
경과 조치 – 조기 준수 214.1 신규 규정의 213조 및 214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는 213조 및 214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과 조치 – 조기 준수 214.1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에 적용되는 신규 규정 213조 및 214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본 규정 213조 및 214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추가
– (삭제)	조기 준수 214.1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된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였다면 적용되었을 213조 및 214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변경 예정

V. DIVISION 4, Subdivision A 가스 난방기(Gas Furnace) (규제원문 44조 참고)

○ 조기 준수 관련 경과 조치 개정

-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부터 발효일 사이에 적용되는 조기 준수 경과 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조항의 명확성을 높임
 - 본 경과 조치는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추가되고, 발효일에 삭제됨

[표 25] 에너지효율 규정 260.1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260.1	경과 조치 – 조기 준수 260.1 신규 규정의 259조와 260조의	경과 조치 – 조기 준수 260.1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가스 난방기는 본 규정의 259조 및 260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스 난방기가 신규 규정의 259조와 260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본 규정의 259조 및 260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VI. DIVISION 6 온수기

○ 해석 - 용어 정의 개정 (규제원문 45조 참고)

- 개정 초안에 추가된 시험 방법 참조 표준 ‘10 C.F.R. 부속서 E’에 대한 정의를 일부 개정하여 해당 시험 방법 적용 시 고온 시험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만 적용하도록 함
 - 본 개정은 적용 제외된 조항이 캐나다용 전기 저장식 온수기에 대해 추가 시험을 요구하여 미국에서와 균일 에너지 계수(UEF)가 달라지는 결과를 만든다는 의견을 반영한 개정사항임

[표 26] 에너지효율 규정 369(1)항 중 ‘10 C.F.R. 부속서 E’ 정의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369(1)	10 C.F.R. 부속서 E는 수시로 개정되는 미국연방규정집 Title 10, Part 430, Subpart B의 부속서 E, 온수기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을 의미한다.	10 C.F.R. 부속서 E는 수시로 개정되는 미국연방규정집 Title 10, Part 430, Subpart B의 부속서 E, 온수기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 (5.1.1항 및 5.1.2항 제외)을 의미한다.

○ Subdivision A, 전기온수기 (규제원문 47~49조 참고)

-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 적용 연기
 - 개정된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을 적용하는 가정용 온수기 제품의 제조 기간 기준일을 2029년 5월 6일로 연기함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372조 및 373조의 Table이 각각 [표 27] 및 [표 28]과 같이 개정됨
- 제품 구분 변경
 -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정격 용량(V_r)이 50L 이상, 76L 이하인 가정용 전기온수기 제품에 대해, 균일 에너지 계수로의 에너지효율 지표 변경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용량 범위 제품을 별도로 구분해 둠(이하 [표 27]의 2번 및 5번, [표 28]의 1.1번 참고)

[표 27] 에너지효율 규정 372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에너지사용 제품	시험 기준	에너지효율 기준	제조 기간
1	V_r 이 50L(13.2 US 갤런) 이상, 270L(71.3 US 갤런) 이하인 상향식 가정용 전기온수기	CSA C191-04	대기 소모(W) $\leq 40+0.2V_r$	1995.02.03.부터 2025.01.01.전까지 2029.05.06.전까지
2	V_r 이 50L(13.2 US 갤런) 이상, 76L(20 US 갤런) 미만인 상향식 가정용 전기온수기	CSA C191-04	대기 소모(W) $\leq 40+0.2V_r$	2029.05.06. 이후
2	V_r 이 270L(71.3 US 갤런) 초과, 454L(120 US 갤런)	CSA C191-04	대기 소모(W)	1995.02.03.부터 2025.01.01.전까지
3	이하인 상향식 가정용 전기온수기		$\leq 0.472V_r-33.5$	2029.05.06.전까지
3	V_r 이 50L(13.2 US 갤런) 이상, 270L(71.3 US 갤런)	CSA C191-04	대기 소모(W)	1995.02.03.부터 2025.01.01.전까지
4	이하인 하향식 가정용 전기온수기		$\leq 35+0.2V_r$	2029.05.06.전까지
5	V_r 이 50L(13.2 US 갤런) 이상, 76L(20 US 갤런) 이하인 하향식 가정용 전기온수기	CSA C191-04	대기 소모(W) $\leq 35+0.2V_r$	2029.05.06. 이후
4	V_r 이 270L(71.3 US 갤런) 초과, 454L(120 US 갤런)	CSA C191-04	대기 소모(W)	1995.02.03.부터 2025.01.01.전까지
6	이하인 하향식 가정용 전기온수기		$\leq 0.472V_r-38.5$	2029.05.06.전까지
5	V_{eff} 이 76L(20 US 갤런) 이상, 208L(55 US 갤런) 이하인 가정용 전기온수기	10 C.F.R. 부속서 E	다음 중 최소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함: (a) 극소-사용량 급수 패턴, 균일 에너지 계수 $\geq 0.8808 - 0.000211V_{eff}$; (b) 저-사용량 급수 패턴, 균일 에너지 계수 $\geq 0.9254 - 0.000079V_{eff}$; (c) 중-사용량 급수 패턴, 균일 에너지 계수 $\geq 0.9307 - 0.000053V_{eff}$;	2025.01.01. 이후 2029.05.06. 이후

번호	에너지사용 제품	시험 기준	에너지효율 기준	제조 기간
			(d) 고-사용량 급수 패턴, 균일 에너지 계수 $\geq 0.9349 - 0.000026V_{\text{eff}}$.	
6	$V_{\text{eff}} \geq 208\text{L}(55 \text{ US 갤런})$ 초과, $454\text{L}(120 \text{ US 갤런})$ 이하인 가정용 전기온수기	10 C.F.R. 부속서 E	균일 에너지 계수 $\geq 0.9349 - 0.000026V_{\text{eff}}$	2025.01.01. 이후 2029.05.06. 이후
7	상업용 전기온수기	10 C.F.R. 부속서 B	대기 소모(%/hr) $\leq 0.3 + 102.2/V_s$	2020.01.01. 이후

※ 개정 초안 대비 개정 최종안의 개정사항을 표시하였음

[표 28] 에너지효율 규정 373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에너지사용 제품	시험 기준	정보
1	1995.02.03.부터 2025.01.01. <ins>전까지 2029.05.06.전까지</ins> 제조된 가정용 전기온수기	(a)~(c)에 규정된 정보에 대해, CSA C191-04	(a) V_r ; (b) 상단 및 하단 요소의 공칭 입력 전력, 단위: W; (c) 대기 소모, 단위: W; 및 (d) 냉수 주입구 배치, 즉, 상향식 (top inlet) 또는 하향식(bottom inlet)
1.1 (신설)	2029.05.06. 이후 제조되고, V_r 이 $50\text{L}(13.2 \text{ US 갤런})$ 이상, $76\text{L}(20 \text{ US 갤런})$ 미만인 가정용 전기온수기	(a)~(c)에 규정된 정보에 대해, CSA C191-04	(a) V_r ; (b) 상단 및 하단 요소의 공칭 입력 전력, 단위: W; (c) 대기 소모, 단위: W; 및 (d) 냉수 주입구 배치, 즉, 상향식 또는 하향식
1.2	2025.01.01. 이후 2029.05.06. 이후 제조되고, V_r 이 76L (20 US 갤런) 이상, 454L (120 US 갤런) 이하인 가정용 전기온수기	10 C.F.R. 부속서 E	(a) V_r ; (b) 연간 에너지 소비량, 단위: kWh; (c) 1시간 등급, 단위: L; (d) V_{eff} ; (e) 균일 에너지 계수; 및 (f) 입력률, 단위: kW (Btu/h).

- 경과 조치 개정사항 변경

- (개정 초안) 373.1조로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조기 준수 경과 조치가 추가되고, 해당 조항이 이전 규정에 대한 적용으로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변경되도록 하였음

- (개정 최종안) 개정 초안에서 제시된 373.1조 개정사항이 [표 29]와 같이 수정되어 본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됨

[표 29] 에너지효율 규정 373.1조 추가 및 변경사항

구분	내용	비고
개정 초안 (CAN/727)	<p>경과 조치 - 조기 준수</p> <p>373.1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전기온수기가 신규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본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추가
	<p>이전 규정 적용</p> <p>373.1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전기온수기가 기존 규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본 규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변경 예정
개정 최종안 (CAN/727/ Add.1)	<p>조기 준수</p> <p>373.1 2028년 5월 6일부터 2029년 5월 6일 전까지 제조된 전기온수기가 2029년 5월 6일 이후 제조된 전기온수기에 적용되는 372조 및 373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추가

- Subdivision B,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규제원문 51~52조 참고)
 - (기준 적용일 연기) 미국 규정과의 조화 및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정용 제품에 대한 개정된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적용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9년 5월 6일로 연기함
 -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376조 Table 1 및 377조 Table 1 각각 [표 30] 및 [표 31]과 같이 변경됨

[표 30] 에너지효율 규정 376조 Table 1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3	1시간 등급이 68L (18 US 갤런) 미만인 가정용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9.05.06.전까지
4	1시간 등급이 68L (18 US 갤런) 이상, 193L (51 US 갤런) 미만인 가정용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9.05.06.전까지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5	1시간 등급이 193L (51 US 갤런) 이상, 284L (75 US 갤런) 미만인 가정용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9.05.06.전까지
6	1시간 등급이 284L (75 US 갤런) 이상인 가정용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9.05.06.전까지
7	가정용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2025.01.01. 이후	2029.05.06. 이후

[표 31] 에너지효율 규정 387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2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제조된 가정용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2018.01.01.부터 2029.05.05.전까지 제조된 가정용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
2.1	2025.01.01. 이후 제조된 가정용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2029.05.06. 이후 제조된 가정용 가스 연소 저장식 온수기	

○ Subdivision C, 기름 연소 온수기 (규제원문 54~55조 참고)

- (기준 적용일 연기) 미국 규정과의 조화 및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정용 제품의 에너지효율 및 시험 기준 **개정안 적용일을 2029년 5월 6일로 연기함**
 -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380조 Table 1을 [표 32]와 같이 변경하고, 381조 Table을 [표 33]과 같이 변경함

[표 32] 에너지효율 규정 380조 Table 1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3	1시간 등급이 68L (18 US 갤런) 미만인 가정용 기름 연소 온수기	...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9.05.06.전까지
4	1시간 등급이 68L (18 US 갤런) 이상, 193L (51 US 갤런) 미만인 가정용 기름 연소 온수기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9.05.06.전까지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5	1시간 등급이 193L (51 US 갤런) 이상, 284L (75 US 갤런) 미만인 가정용 기름 연소 온수기	...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9.05.06.전까지
6	1시간 등급이 284L (75 US 갤런) 이상인 가정용 기름 연소 온수기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18.01.01.부터 2029.05.06.전까지
7	가정용 기름 연소 온수기		2025.01.01. 이후	2029.05.06. 이후

[표 33] 에너지효율 규정 381조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2	2018.01.01.부터 2025.01.01.전까지 제조된 가정용 기름 연소 온수기	2018.01.01.부터 2029.05.06.전까지 제조된 가정용 기름 연소 온수기	...
2.1	2025.01.01. 이후에 제조된 가정용 기름 연소 온수기	2029.05.06. 이후에 제조된 가정용 기름 연소 온수기	

- Subdivision D,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규제원문 57~58조 참고)
 - (기준 적용일 연기) 미국 규정과의 조화 및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이 아닌 **2029년 5월 6일 및 그 이후에 제조된 가정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제품에 시험 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정 385조 내 Table을 [표 34]와 같이 개정하고, 에너지효율 규정 386조 내 Table을 [표 35]과 같이 개정함

[표 34] 에너지효율 규정 385조 내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Column 4, 제조 기간	
			개정 초안 (CAN/727)	개정 최종안 (CAN/727/Add.1)
1	최대 유속이 6.4L/min 미만인 가정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	2020.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20.01.01.부터 2029.05.06.전까지
2	최대 유속이 6.4L/min 이상인 가정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2020.01.01.부터 2025.01.01.전까지	2020.01.01.부터 2029.05.06.전까지
3	최대 유속이 6.4L/min 미만인 가정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2025.01.01. 이후	2029.05.06. 이후
4	최대 유속이 6.4L/min 이상인 가정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2025.01.01. 이후	2029.05.06. 이후
5	상업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2023.07.01. 이후	2023.07.01. 이후

[표 35] 에너지효율 규정 386조 내 Table 개정 비교표

번호	Column 1, 에너지사용 제품		...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1	2020.01.01.부터 2025.01.01.전까지 제조된 가정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2020.01.01.부터 2029.05.06.전까지 제조된 가정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
1.1	2025.01.01. 이후에 제조된 가정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2029.05.06. 이후에 제조된 가정용 가스 연소 순간식 온수기	

VII. DIVISION 7 램프 (규제원문 4조, 60~69조 참고)

- 일반 조명용 램프 수명 정보 제출 관련 규정 삭제 (규제원문 4조 참고)
 - (개정 초안) 일반 조명용 램프의 범위 변경에 따라 램프의 수명에 관련된 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한 에너지효율 규정 6조 또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개정 최종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에너지효율 규정 6조 전체를 삭제하도록 함
- 용어 정의 개정
 - (삭제) ANSI C78.20 표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삭제함
 - 이와 관련하여, 433(1)항 내 ‘반사 램프’ 와 ‘쇼케이스 램프’의 용어 정의에서 ANSI C78.20 표준에 대한 인용이 삭제됨
 - (추가) 기존 규정(former Regulation)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

[표 36] 에너지효율 규정 424조 용어 정의 개정안

용어 정의	비고
ANSI C78.20 은 ANSI(미국 국가표준협회) 표준, ANSI C78.20-2003, 전기 램프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 E26 중간 나사 베이스가 있는 A, G, PS 및 유사 형태를 의미한다.	삭제
기존 규정 (former Regulations)은 에너지효율 규정(2016)을 개정하는 규정 (18차 개정)의 subsection 1(2)가 발효되는 날 직전의 본 규정을 의미한다.	추가

- 라벨 부착 의무 적용 연기
 - 미국의 라벨 부착 의무 규정 시행 시기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라벨 부착 의무 준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 기준이 다음과 같이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연기됨

[표 37] 에너지효율 규정 425조 개정 비교표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라벨 의무 425 (1)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고, 판매 혹은 임대의 목적으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운송되거나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일반 조명용 램프는 426조에서 429조에 따른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라벨 의무 425 (1)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고, 판매 혹은 임대의 목적으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운송되거나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일반 조명용 램프는 426조에서 429조에 따른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기존 규정 적용 (2) 기존 규정 425조에 언급된 모든 램프 중 2026년 1월 1일 전에 제조되고,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운송되거나 캐나다로 수입되는 램프는 기존 규정 426조~429조에 따라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기존 규정 (2) 기존 규정 425조에 언급된 램프 중 2027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램프에 대해 기존 규정 425조부터 429조가 계속 적용된다.

○ 에너지효율 규정 적용 연기

-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제품 제조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2년 연기하여 개정된 에너지효율 기준 적용일을 2026년 1월 1일과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함

[표 38] 에너지효율 규정 434조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434(2)	제한 (2) 그러나, 4조, 5조, 435조, 436조의 목적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조명용 램프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2024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일반 조명용 백열 램프 또는 일반 조명용 백열 반사 램프; 또는 (b) 2025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일반 조명용 램프로 일반 조명용 백열 램프나 일반 조명용 백열 반사 램프가 아닌 것 	제한 (2) 그러나, 4조, 5조, 435조, 436조의 목적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조명용 램프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2026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일반 조명용 백열 램프 또는 일반 조명용 백열 반사 램프; 또는 (b) 2027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일반 조명용 램프로 일반 조명용 백열 램프나 일반 조명용 백열 반사 램프가 아닌 것

○ 경과 조치 개정

- (개정 초안) NRCan은 램프에 대한 개정안 조기 준수 경과 규정을 최종안 관보 게시일에 436.1조로 추가하고 해당 조항을 최종안 발효일에 기준 규정 적용 관련 조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음
- (개정 최종안) 다음과 같이 기존 규정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434.1조의 별개 규정으로 추가하고, 조기 준수에 관한 경과 규정 436.1조를 변경함
 - 램프에 대한 기준 규정 적용 및 개정안 조기 준수 관련 경과 조치 개정 최종안은 다음과 같음

[표 39] 램프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 최종안

조항	경과 조치	비고
434.1	<p>기존 규정 적용</p> <p>434.1 (1) 기존 규정 4조, 5조, 424조, 430조에서 444조는 다음과 램프에 계속 적용된다.</p> <p>(a) 기존 규정 430조에 정의된 CFL로 2027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것;</p> <p>(b) 기존 규정 433(1)조에 정의된 일반 조명용 램프로 2026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것;</p> <p>(c) 기존 규정 437조에 정의된 스펙트럼 조정 백열 램프로 2026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것; 또는</p> <p>(d) 기존 규정 441조에 정의된 일반 조명용 백열 반사 램프로 2026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것</p> <p>비적용 - 조기 준수</p> <p>(2) 436.1조에 따라 4조, 5조, 435조, 436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램프에는 상기 Subsection (1)을 적용하지 않는다.</p>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추가
436.1	<p>경과 조치 - 조기 준수</p> <p>436.1 신규 규정 433(1)조에 정의된 일반 조명용 램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규정 4조 및 5조의 요구사항 및 본 Division의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a) 신규 규정 433(1)항에 정의된 일반 조명용 백열 램프 또는 일반 조명용 백열 반사 램프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되고, 램프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었다면 적용되었을 신규 규정 4조, 5조, 435조, 436조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p> <p>(b) 기타 (a)가 아닌 모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되고, 램프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었다면</p>	개정 최종안 관보 고시일에 추가

조항	경과 조치	비고
	적용되었을 신규 규정 4조, 5조, 435조, 436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	
	조기 준수 436.1 일반 조명용 램프는 다음과 같은 경우 4조, 5조, 435조, 436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일반 조명용 백열 램프 또는 일반 조명용 백열 반사 램프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되고, 램프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었다면 적용되었을 4조, 5조, 435조, 436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b) 기타 (a)가 아닌 모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되고, 램프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었다면 적용되었을 4조, 5조, 435조, 436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개정 최종안 발효일에 상기 436.1조 대체

VIII. DIVISION 9, Subdivision F 선간 전압 온도 조절기 (규제원문 70조 참고)

○ 에너지효율 규정 적용일 연기

-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제품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선간 전압 온도 조절기에 대한 신규 에너지효율 기준 적용일을 제품 유형에 따라 2026년 7월 1일과 2027년 7월 1일로 연기함

[표 40] 에너지효율 규정 595조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595(2)	제한 (2) 그러나, 4, 5, 596, 597조의 목적상, 2025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제조된 것이 아닌 선간 전압 온도 조절기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한 (2) 그러나, 4, 5, 596, 597조의 목적상,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선간 전압 온도 조절기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a) 2026년 7월 1일 및 그 이후에 제조된 벽걸이형 온도 조절기 또는 2 부품(two-component) 온도 조절기 (b) 2027년 7월 1일 및 그 이후에 제조된 내장형(built-in) 온도 조절기

IX. DIVISION 13 배관 공급 퍼팅 (규제원문 2조, 75조 참고)

○ 검증 마크 표시 요구사항 개정 (규제원문 2조)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체용 에어레이터인 수도꼭지에 대한 검증 마크를 제품 포장 외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규정 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표 41] 에너지효율 규정 4조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4(2)	<p>위치 및 가시성</p> <p>(2) 검증 마크는 에너지 사용 제품 표면에 부착되어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단, 다음 에너지 사용 제품의 경우, 검증 마크가 제품 포장 외부에 부착될 수 있다:</p> <p>(a) ~ (f) [생략]</p> <p>(g) 외부 전원공급장치</p>	<p>위치 및 가시성</p> <p>(2) 검증 마크는 에너지 사용 제품 표면에 부착되어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단, 다음 에너지 사용 제품의 경우, 검증 마크가 제품 포장 외부에 부착될 수 있다:</p> <p>(a) ~ (f) [생략]</p> <p>(g) 외부 전원공급장치; 그리고</p> <p>(h) 교체용 에어레이터인 수도꼭지</p>

○ 수도꼭지와 샤워 헤드 적용 예외 범위 확대

- (의견) 개정 초안에서 수도꼭지와 샤워 헤드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정으로 유속 제한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낮아진 유속으로 인한 배관 병원균 증식 우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접수되었음
- (개정 최종안) NRCan은 [표 42]와 같이 수도꼭지와 샤워 헤드의 각 정의를 수정하여 의료 시설 전용으로 설계, 판매되는 제품을 에너지효율 규정 적용 예외 범위에 추가함

[표 42] 수도꼭지 및 샤워 헤드 정의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803.1	<p>다음 정의가 본 Subdivision에 적용된다: 수도꼭지는 다음을 의미한다.</p> <p>[중략]</p> <p>이는 저압 정수기나 냄비 필러(pot filler)는 포함하지 않는다.</p>	<p>다음 정의가 본 Subdivision에 적용된다: 수도꼭지는 다음을 의미한다.</p> <p>[중략]</p> <p>이는 의료 시설 전용으로 설계 및 판매 되는 수도꼭지, 저압 정수기나 냄비 필러는 포함하지 않는다.</p>
803.5	<p>본 Subdivision에서 샤워 헤드는 목욕 하는 사람에게 물을 분사하기 위해</p>	<p>본 Subdivision에서 샤워 헤드는 목욕 하는 사람에게 물을 분사하기 위해</p>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p>단일 공급 배관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노즐이 있는 부품 또는 부품 세트를 의미한다.</p> <p>이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몸을 물로 씻어내는 응급 세척 전용으로 설계, 판매되는 샤워 헤드를 포함하지 않는다.</p>	<p>단일 공급 배관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노즐이 있는 부품 또는 부품 세트를 의미한다.</p> <p>이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응급 세척 전용으로 설계, 판매되는 샤워 헤드나 의료 시설 전용으로 설계, 판매되는 샤워 헤드를 포함하지 않는다.</p>

X. Division 14, subdivision B 수영장 펌프 (규제원문 76조 참고)

○ 예외 대상 추가

- 수영장 펌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대상에 다음 제품을 추가함
 - 미국 DOE에서 2021년 4월 1일 발표한 성명서*에 언급된 펌프와 동일한 사양의 상업용 수영장 펌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미국 에너지효율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 U.S. dedicated purpose pool pump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issued on April 1, 2021([URL](#))

[표 43] 수영장 펌프 예외 대상에 추가된 제품

예외 - 수영장 펌프의 정의
<p>(2) (a) – (d) [생략]</p> <p>(e) 다음을 모두 만족하고, 상업적 용도로만 판매되는 펌프</p> <p>(i) 펌프 본체에 흡입 측 배관이 연결될 수 있고, 내경이 72mm(2.85인치) 이상인 오리피스가 있는 경우</p> <p>(ii) 15.24m(50피트) 수두(head)에서 측정된 성능이 분당 757리터(분당 200 US갤런) 이상인 경우</p>

○ 신규 에너지효율 규정 적용 연기

-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는 수영장 펌프의 제조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본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수영장 펌프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정의 준수기한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함**

[표 44] 에너지효율 규정 809조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809(2)	<p>제한</p> <p>(2) 그러나, 4, 5, 및 810조의 목적상, 2025년 1월 10일 및 그 이후에 제조된</p>	<p>제한</p> <p>(2) 그러나, 4, 5, 및 810조의 목적상, 2026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제조된</p>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것이 아닌 수영장 펌프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것이 아닌 수영장 펌프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XI. Division 15 공기 압축기 (규제원문 76조 참고)

○ 공기 압축기 정의 수정

- 에너지효율 규정 812조에 명시된 공기 압축기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여러 개의 압축 요소가 있는 압축기가 포함되도록 함

[표 45] 에너지효율 규정 812조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812	공기 압축기는 공기를 압축하도록 설계되고, 대기 또는 다른 공기 공급원에 개방된 입구가 있으며, 압축 요소 , 하나 이상의 드라이버, 압축 요소를 구동하는 기계 장비 및 보조 장비로 구성되고 다음 기능을 모두 갖춘 윤활 회전식 압축기를 의미한다:	공기 압축기는 공기를 압축하도록 설계되고, 대기 또는 다른 공기 공급원에 개방된 입구가 있으며, 하나 이상의 압축 요소(베어 압축기) , 하나 이상의 드라이버, 압축 요소를 구동하는 기계 장비 및 보조 장비로 구성되고 다음 기능을 모두 갖춘 윤활 회전식 압축기를 의미한다:

○ 신규 에너지효율 규정 적용 연기

-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는 공기 압축기의 제조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본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공기 압축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정의 준수기한을 2026년 7월 1일로 연기함**

[표 46] 에너지효율 규정 813조 개정 비교표

조항	개정 초안(CAN/727)	개정 최종안(CAN/727/Add.1)
813(2)	제한 (2) 그러나, 4, 5, 및 814조의 목적상, 2025년 1월 10일 및 그 이후에 제조된 것이 아닌 공기 압축기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한 (2) 그러나, 4, 5, 및 814조의 목적상, 2026년 7월 1일 및 그 이후에 제조된 것이 아닌 공기 압축기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발효일

- (발효일) 2025년 10월 10일
- 본 개정 최종안은 캐나다 공식 관보 제2부(Canada Gazette, Part II)에 고시된 날(2025년 4월 9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10월 10일 발효됨
- 단, 경과 조치와 관련된 일부 개정사항은 본 개정 최종안이 관보 제2부에 고시된 날 발효됨

[표 47] 개정 최종안의 관보 고시일에 발효되는 규정

규제원문 조항	내용
1(1)항	신규 규정에 대한 정의 추가 및 삭제
19(1)항	(127.1조) 일체형 중앙식 에어컨에 대한 조기 준수 경과 조치 개정
23(1)항	(135.1조) 분리형 중앙식 에어컨에 대한 조기 준수 경과 조치 개정
36(1)항	(206.1조) 일체형 중앙식 히트펌프에 대한 조기 준수 경과 조치 개정
40(1)항	(214.1조) 분리형 중앙식 히트펌프에 대한 조기 준수 경과 조치 개정
44(1)항	(260.1조) 가스보일러에 대한 조기 준수 경과 조치 개정
68(1)항	(436.1조) 일반 조명용 램프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

3

관련 법령 및 표준

□ 관련 법령

○ 캐나다 법령

- Energy Efficiency Act (에너지효율 법)
- Energy Efficiency Regulations, 2016 (에너지효율 규정(2016)) ([URL](#))

○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 Title 10, Part 430 Energy Conservation Program for Consumer Products
(소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 Title 10, Part 431 Energy Efficiency Program for Certain Commercial and Industrial Equipment (특정 상업용 및 산업용 장비에 대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불임

규제 참고자료

□ 출처

○ 개정 최종안(CAN/727/Add.1) 규제원문

- 캐나다 공식 관보, 파트 II, 159권, 8호(2025년 4월 9일 발행) ([URL](#))

○ 개정 초안(CAN/727)

- 캐나다 공식 관보, 파트 I, 158권, 25호(2024년 6월 22일 발행) ([URL](#))